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2. 23.(목) 09:00 2023. 2. 23.(목) 석간	배포 일시 2023. 2. 23.(목)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587)		
	담당자 사무관 김은화 (044-202-7599)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배제하고 취약 근로자 지원 강화한다**

- 2월 행정예고 등 절차 시작, 3월 중 「노동단체 지원사업」 공고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여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 0.2%),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하여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23년 44억)의 50%(22억)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하여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❷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지원사업 재편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하여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❸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책임있게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 관할 행정관청에 재정 관련 장부·서류의 비치·보존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동 자료로 갈음

❹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등 사업 관리 내실화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22년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하여,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 (現) 직전년도 평가결과가 "E"인 사업만 참여 배제 → (改) 최근 3년간 "D"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 중 전년도 평가결과가 "D"인 사업도 참여 배제

<행정예고 및 사업공고>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노동단체 지원사업 및 노동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동시 공고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붙임. 2023년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개요



붙임 1

2023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개요

- (목적) 노동자 권익보호,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을 위해 노동단체 및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 (23년 예산) 5,602백만원(노동단체: 4,472, 비영리법인 1,130)
 - *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예산의 최소 15% 이상을 자체 부담
- 지원대상 기관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 등
 - 정규직·미조직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격차완화 및 일터혁신 등 노사관계 관련 사업을 주로 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물적·인적 자원을 갖춘 비영리법인
- 사업 절차
 - (심사 및 선정기준)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
 - 외부위원 중심으로 심사위원회(5인~15인 이내, 외부 전문가 3명 이상)를 구성, 평가요소를 토대로 심사위원별로 독립적으로 점수 부여
 - ** 평가요소: 목적 적합성, 계획 충실성, 내용 현실성, 효과성, 예산 적정성 외에 지원기관 재정여건, 다른 지원기관과의 형평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절차) 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심사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정산 및 사후 (사업)평가

붙임 2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주요 내용

	현 행	개 선
지원대상 확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산업별 연합단체 등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산업별 연합단체 등 노동조합 +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
지원예산 조정	구분 없이 지원	신규 참여기관 50% 별도 배정
지원사업 개편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인식조사 등 정책연구, 법률 상담, 국제교류 등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격차 완화 관련 사업 우대 지원, 간부 교육, 국제교류 등은 노조 자체 예산 활용
회계 관리 강화	①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여부 미확인 ② 전수 자체점검 후 일부 현장점검 ③ 고용부 자체 정산보고서 검증	①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 미준수 시 지원 배제 ② 전체 현장점검 ③ 회계전문기관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